

일본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岡山지역의 법인후견을 중심으로-

Trends of Japanese Adult Guardian's Typ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전병주*, 김건호**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Byeong-Joo Jeon(okjbj@hanmail.net)*, Keon-Ho Kim(kkh630828@hanmail.net)**

요약

과거의 행위무능력을 규율하던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요보호성년자의 보호에 불충분하며, 그들의 권리와 법률관계 형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결국 정부는 민법 개정을 통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제도의 실제적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과 사회·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전반적인 성년후견제도의 운용이 유사하므로 그 나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에 증가하는 법인후견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활동요건 및 내용을 파악하여 한국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인 | 법인후견 |

Abstract

The incompetency and quasi-incompetency system regulated legal incompetence in the past is insufficient for protections of the adults with insufficient abilities of judgement, the criticism has been continued that the system is not efficiently respond to their rights and legal relationship formation. At last, the government introduces adult guardianship system through revising the civil law. At this point, just several months prior to the enforcem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we should be prepared to issues which may occur in the actual operation of the system. Japan has high similarities in social and culture matters with Korea and in the general operation of its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similar to Korea's, Therefore, Korea should be prepared for the basis to implement the optimized system through in advance understanding the trend in Japan. The study reviews the trends of Japanese adult guardian's type, and draws suggestions for Korea by finding activity requirements and subjects focusing on the currently increasing corporation guardianship.

■ keyword : | Adult Guardianship System | Adult Guardian | Corporation Guardianship |

* 이 글은 2011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번호 : #130130-004

접수일자 : 2013년 01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3월 15일

교신저자 : 김건호, e-mail : kkh630828@hanmail.net

I. 서론

한국에서 과거의 행위무능력을 규율하던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 능력위주로 운용되고 있어서 판단능력이 부족한 요보호성년자의 실질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1-4]. 또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서 비롯된 신상보호에 대한 욕구의 증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충실한 복지가 요청되는 등의 사회적 변화에 맞서 이 제도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나타났다[5][6]. 한편, 그들의 부족한 판단력을 성년후견인을 통하여 보충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7-9], 결국 정부는 민법 개정을 통하여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¹⁾.

이미 프랑스에서는 1960년 이래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여 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나 정상화 이념의 강화를 통하여 그들의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도모하고 있으며[10], 독일과 미국, 일본 등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하여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전 인구의 1%에 상당하는 사람들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물론, 이 제도가 요보호성년자에게 특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규정보다 좀 더 간편하고 폭넓게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한편 그들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서[12], 그들이 일상에서 온전한 삶을 향유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나 문제해결을 위한 처방을 제시함에 있어서 경험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13]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몇 달 앞둔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그 대처방안을 파악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2]. 특히, 일본은 한국과 사회·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후견 유형과 임의후견제도 등 전반적인 성년후견제도의 운용이 유사하므로[25] 더욱 주

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6년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급속한 가족사회의 해체로 인하여 자식에게 부양받는 고령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14]. 더욱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혼재되어 있어 그들에 대한 돌봄과 그와 관련한 서비스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15],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해 가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보호성년자가 정보의 비대칭성과 판단능력 결여로 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심지어 공식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16]. 2006년에 시행된 장애인자립지원법(障害者自立支援法)과 고령자학대방지법(高齢者虐待防止法)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계약화의 흐름과 더불어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 지원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었다[17]. 또한, 요보호성년자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스템으로서의 운용이 강조되면서 이 제도가 완수해야 할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18][19].

2012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발표한 '성년후견관계사건의 현황(成年後見關係事件の概況)'[20]에 의하면 성년후견관계사건(후견·보좌·보조 개시 및 후견감독인 선임사건 포함)²⁾의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권리침해가 있더라도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제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더라도 스스로 보호 및 구제를 요청하거나 확보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후견활동이 가족 및 친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17]는 등의 이유로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가 지체되는 지적을 받는다. 이미 많은 문제가 표면화되었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많은 고찰과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후견인의 확보 및 후견인의 부정행위, 후견 관련 비용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노출하

2) 일본은 구민법상의 금치산·준금치산제도를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번식할 능력이 결한 상태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견제도'(일본 민법 제7조)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번식할 능력이 현저하게 불충분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좌제도'(동법 제11조), '후견 및 보좌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한 보호유형으로 '보조제도'(동법 제14조)로 개정하였다.

1)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이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로 공포되어 2013년 7월 1일 시행된다.

고 있다[17][21][22]. 특히, 훌륭한 자질을 갖춘 후견인의 확보는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23][24]로 대두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 제도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법학적 관점에서 제도의 이념이나 법률 개정 등에 대한 고찰 등에 집중되었으며, 간헐적으로 진행된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연구는 제도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6][25]. 더욱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성년후견인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는 제한적이었으며, 특히 성년후견인의 유형 중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법인후견과 관련한 연구는 많이 미흡하므로 본 연구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성년후견관계사건 현황을 분석하여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에 증가하는 법인후견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활동요건 및 내용을 파악하여 한국에서 법인후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 실태

1. 성년후견관계사건 현황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제도의 시행을 앞둔 한국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이다. 일본에서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최고재판소[20]에 의하면 2011년 성년후견관계사건의 신청건수는 31,402건으로 나타나 2010년의 30,079건과 비교하여 약 4.4% 증가하였으며, 제도 초기인 2000년의 9,007건과 비교하면 약 3.5배 증가하였다. 성년후견관계사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후견개시 심판(일본 민법 제7조)의 경우에 그 제기건수는 전년대비 약 4.0% 증가한 25,90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제도의 초기인 2000년의 7,451건과 비교하면 약 2.4배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보좌개시 심판(동법 제11조)의 경우에 그 제기 건수는 전년대비 약 9.9% 증

가한 3,708건이었으며, 2000년의 884건과 비교하면 약 4.2배 증가하였다. 보조개시 심판(동법 제14조)의 경우에 그 제기 건수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전년대비 약 4.4% 감소한 1,144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견감독인 선임의 심판의 제기 건수는 전년대비 약 7.1% 증가한 645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의 성년후견제도는 후견 등 모든 유형에서의 이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년후견관계사건에서 신청인의 인용비율[20]은 약 92.7%로 나타나 2010년의 약 92.1%와 비슷하였지만, 2000년의 68.7%와 비교하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후견개시 인용비율은 약 93.0%로 나타났으며, 2000년의 약 70.2%와 비교하면 역시 매우 높아진 것이다.

표 1. 성년후견관계사건 현황[20]

(단위: 건)

구분	후견	보좌	보조	후견 감독인	합계
2000	7,451	884	621	51	9,007
2001	9,237	1,043	645	103	10,928
...	...				
2009	22,983	2,837	1,043	534	27,397
2010	24,905	3,375	1,197	602	30,079
2011	25,905	3,708	1,144	645	31,402

2.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

다음으로 성년후견관계사건 현황[20]을 토대로 성년후견인 등(성년후견인·보좌인·보조인, 성년후견감독인 포함: 이하 ‘성년후견인’이라고 함)과 본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법서사, 사회복지사 및 법인 등 ‘제3자 성년후견인’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다음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그 외의 친족 등의 이른바 ‘친족후견인’이 선임된 비율은 제도 초기인 2000년에는 약 91.0%에 이르렀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약 55.6%까지 감소하였다. 반면에, 친족 이외의 제3자가 성년후견인에 선임된 경우는 2000년도의 약 9.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

년에는 약 44.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가족 신상과 재산이 노출되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지만, 가계나 자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친족보다 제3자인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문제발생의 소지를 적게 하여 본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의 개인주의 성향도 함께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2].

표 2. 성년후견인 선임 현황[20]

구분	2000	2001	...	2009	2010	2011
가족 및 친족	91.0	86.0	...	63.5	58.6	55.6
제3자	9.0	14.0	...	36.5	41.4	44.4

일본에서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는 주요 전문직 및 법인의 현황[20]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2011년 기준으로 사법서사가 전년대비 약 9.2% 증가한 4,8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0년과 비교하면 약 41.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변호사가 전년대비 약 12.3% 증가한 3,278건이었으며, 사회복지사가 전년대비 약 7.3% 증가한 2,740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문직 후견인 중에서 사법서사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전체 사법서사의 26%가 후견업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성년후견인 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 다른 분야의 전문가보다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26].

일본은 과거 금치산·준금치산제도에서는 법인에 의한 후견이 불가능하였으나, 이용자의 다의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하여 법인후견이 가능해졌으며(민법 제843조),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사회복지협의회와 사법서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직능단체에서 수행한 법인후견은 2010년의 961건과 비교하여 약 69.1% 증가한 1,390건으로 나타나 개인적 형태의 후견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후견이 크게 증가하면서 2012년부터 ‘법인’이라는 기존의 포괄적인 성격의 항목 대신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법서사법인’ 등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발표함으로써 후견을 필요로 하거나 그것을 희망하

는 요보호성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법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법인이 성년후견인에 선임된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34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법서사법인 131건, 변호사법인 123건, 행정서사법인 및 세무사법인 등의 기타 법인이 796건을 각각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참여가 가장 활발한 이유는 이 제도에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2009년에는 34개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119개까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27]. 이와 같이 전문직 단체가 법인형태로서 수행하는 후견업무가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日常生活自立支援事業)등의 ‘복지관련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6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년후견인 후보자가 부족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라는 응답이 28.0%로 나타났다[28].

표 3. 주요 전문직 및 법인의 성년후견인 현황[20]

구분	2000	2001	...	2009	2010	2011
사법서사	117	395	...	3,517	4,460	4,872
변호사	166	626	...	2,358	2,918	3,278
사회복지사	2,078	2,553	2,740
행정서사	704
법인	사회복지협의회		...			340
	사법서사	13	47	682	961	131
	변호사					123
	기타법인					796

주) 사법서사법인, 변호사법인의 건수는 사법서사, 변호사 건수에도 포함됨.

III. 법인후견의 활성화

1. 성년후견인의 확보

일본에서 지난 10여 년간 가족 및 친족에 의한 후견은 그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제3자에 의한 후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의 이용 확대는 필연적으로 전문가 및 그 법인, 시민후견인 등 제3자 성년후견인 확보의 과제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현실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친족후견인에 대한 지원³⁾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민후견인⁴⁾ 양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여전히 후보자 등록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9][17][21]. 더욱이 점차 제도가 활성화되면 친족후견인의 대응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 그들의 다양한 욕구에 상응하는 적절한 지원을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며, 최근의 고령의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대되는 것이 시민후견인과 법인후견이라 할 수 있다[19][31]. 성년후견제도의 사회화가 공론화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후견유형이 더욱 바람직하며[19][23], 이를 위해서 전문역량을 갖춘 법인후견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후견인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일본은 자산이나 친척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에 따라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의 후견인 양성과 그들의 저변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12]. 제도의 초기단계에서는 시민이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제도 시행 2~3년이 지난 후 '성년후견의 사회화'로서 시민후견인이 주목받게 되었다[23]. 일본에서도 본인의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신상보호도 함께 중시하며, 본인 의사의 존중이나 정상화 이념의 적극적인 반영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시민후견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33]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민후견인 양성과정을 많이 개설하였다. 실제로 도쿄도(東京都)의 경우에는 '성년후견 활용을 위한 안심생활창조사업실시요강(東京都成年後見活用あんしん生活創造事業実施要綱)'에 근거한 사회공헌형 후견인(社會貢獻型後見人)을 양성하는 교육을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시민후견인 활동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도쿄도의 '후견인의 후보자 양성을 위한 기초강습 수료생 현황(後見人等候補者養成事業基礎講習修了生選任状況)'[34]을

살펴보면 2005년 60명이 수료하였지만, 전반적으로 강습참여 인원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2010년까지 291명이 수료하는데 그쳤으며, 사건에 선임된 경우는 72건에 불과하였다. 2012년에 비로소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후견인에 대한 공식적인 현황이 최고재판소에 의해 처음 발표되었지만, 그 인원은 9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등의 사회적변화로 인하여 성년후견인 약 250만 명의 잠재적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29], 거기에 알맞은 후견인의 수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한번 1인가구로 생활하면 독거생활이 지속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은 상태에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있는 사회적 자원은 더욱 부족하므로 보편적 지원은 물론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예방적 차원에서의 보호정책이 요구된다[35]. 더욱이 복잡한 현대사회의 특성상 개인형태의 후견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 점차 증가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인후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2. 법인후견

2.1 의의

일본에서 법인후견은 위의 [표 3]과 같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법인에 의한 후견은 미국에서도 피성년후견인의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폭넓은 유연성을 갖고 활동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2]. 오카야마현(岡山縣)의 고령화율은 일본의 평균보다 더 높음으로 현 내의 인구 고령화가 뚜렷하고, 전반적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적절한 성년후견인의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이 지역에서는 법인후견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법인후견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23]. 오카야마(岡山) 가정재판소는 법인후견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36]. 첫째, 성년후견인을 수임하는 친족이 없고, 해당 사안이 복잡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법인후견의 선임이 적합하다. 둘째, 피성년후견인의 자산이 적어 보수를 지불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제3자 후

3) 2011년부터 친족후견지원사업(親族後見支援事業)의 실시를 통해서 친족에 의한 후견업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친족후견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그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그들의 활동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4) 일본 成年後見法學會는 '市町村における権利擁護のあり方に關する研究(2007)'[32]에서 시민후견인에 대하여 '변호사나 사법서사 등의 자격은 없지만, 사회공헌을 위한 의욕이나 윤리관이 높은 일반시민 중에서 성년후견에 관한 일정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를 학습한 제3자 후견인 등의 후보자'라고 정의한다.

견인의 선임이 곤란한 경우로서 법인이 갖고 있는 조직력에 의하여 개인형태의 후견인보다 상대적으로 다수의 사건을 수입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법인후견이 더 적합하다. 셋째, 친족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학대가 있는 상황에서 피후견인을 위해 적절한 대응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소속된 법인에서 종합적인 후견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서 유리하다.

후견을 담당할 수 있는 법인 성격으로 영리법인은 적절하지 않으며, 입소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도 피후견인과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발생하여 이익상반의 가능성이 크므로 후견을 담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37][38]. 반면에, 인지증 고령자 및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요구가 다양하므로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복지 관련 법인을 통해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19][24].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전자와 같은 비판을 받기도 하여 그들은 도쿄도 성년후견센터와 같이,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지자체와 함께 구성원이 되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2011년 기준으로 성년후견관계사건에서 법인후견의 선임은 전체 성년후견사건 중에서 약 4.4%에 그치고 있으나, 제3자 성년후견인 중에서 약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0여간 일본에서 법인에 의한 후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 법인후견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이러한 법인후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2.2 자격요건

법인이 성년후견인의 직무를 담당하고 싶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어도 가정재판소로부터 그 법인이 후견인으로서의 적격판단을 받아서 선임되지 않는 한 후견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일본은 성년후견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개인 형태의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후견 형태에서 법인의 자격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들에 대한 적격여부는 법인에서 행하는 사업의 종류 및 내용, 피후견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정재판소에서 판단해야 한다. 오카야마(岡

山) 가정재판소 성년후견소위원회는 각 법인이 후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적어도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실무적인 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36]. 우선적으로는 해당 법인의 성격이 그들이 실시하려는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적절한 후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제(이사 및 감사 등의 조직, 변호사 및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통한 법인 운영 관리와 감시, 전문가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법인 담당자의 적절한 자격충족과 그들에 대한 연수제도의 마련 등)를 갖추어야 한다. 세 번째는, 후견사무에 대한 적절한 감독기구(회계전문가를 통한 감사 빈도·방법, 후견 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견제 기능 등)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법인의 재정이반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법인후견이 가능하게 되며, 그 이외에 피성년후견인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법인과 피성년후견인과의 이익 상반이 되지 않으며, 피성년후견인의 정보 보호를 위한 체제 정비 등도 실무적인 과제로서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2.3 유형화

법인후견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형태 등에 의해 그것을 일정 정도 유형화하여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인이 실제 수행하는 후견업무의 성격에 따라 유형화하면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된다[26]. 제1유형은 재산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도쿄 변호사회, 사법서사회 성년후견센터 리ーガルサポート 등의 사법단체가 주로 활동하며, 도쿄 사회복지사회도 여기에 해당한다. 제2유형은 성년후견에 대한 업무뿐만 아니라 복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일본 사법지원센터(法テラス),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이에 해당한다. 제3유형은 재산관리와 신상감호를 함께 균형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로서 사회복지협의회 성년후견센터, 각 지역의 복지 NPO법인이 주로 해당한다.

이외에도 법인의 사업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우선 후견보수를 주된 수입으로 해서 해당사업을 실시하는 사업형과 보수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적인 필요성 내지 사회운동으로서 후견인에 임

하는 사회공헌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것을 구체적인 활동상황을 기준으로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사업형은 전문직활동 및 일반활동으로, 사회공헌형은 공적위탁사업형 및 독자사업형으로 나뉘어진다[17].

표 4. 법인후견의 사업형태에 따른 유형화

구분		내용
사업형	전문직 활동	특정의 전문직이 그 특성을 살려 전문적인 조직적인 활동을 실시해 일정한 보수를 확보하며, 임의 후견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활동	후견 수임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하며, 일반적인 관련 사업과도 제휴해 일정한 수입을 확보하며, 임의 후견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공헌형	공적위탁 사업형	자치체로부터 공적인 사업위탁(성년후견센터 사업 등)을 받아 활동한다.
	독자 사업형	대상자의 특징과 같은 방법으로 법인의 독자적인 이념이나 목적으로 특화된 활동을 실시한다. 독자 사업만으로 활동하는 경우와 공적인 사업위탁에의 이행을 함께 목표(독자사업과 병용)로 하는 경우가 있다.

2.4 법인후견의 장·단점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지원의 가능성을 가족공동체로 한정하는 것은 그가 보다 더 좋은 후견인을 얻을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공동체 내부에 있어서의 경제적 문제나 확대 등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내포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후견지원을 받을 수 없다[39].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후견은 피성년후견인에게 필요한 후견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제공할 수 있는 업무영역도 더욱 광범위하다. 또한, 후견을 희망하지만, 자산이 적은 상황에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에게 지불하는 보수가 낮게 설정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개인형태의 후견에서 그 수입이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인후견은 다수의 후견업무와 후견업무의 협동화 등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인후견은 개인 후견에 비해 많은 사례를 관리하면서 후견업무의 경험을 축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질 높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41][42]. 특히, 후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법률, 의료 및 복지영역

등을 담당할 수 있는 다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어서 복잡한 사안에서 보다 적절한 대처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복수 후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피성년후견인은 1회 선택을 통하여 다양한 후견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고 다양한 권리의 안정적인 담보가 가능할 것이다[12].

성년후견인이 후견업무를 수임했을 경우에는 수년에 걸쳐서 그 업무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성년후견인이 청·장년기인 경우에는, 그 업무가 수십 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형태의 후견보다는 법인후견이 업무의 지속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쉽다[19][40]. 법인에서는 복수의 담당자가 조직적으로 그 역할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후견업무를 장기간 담당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후견업무가 단절되지 않아서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또한, 성년후견인의 사망이나 피성년후견인의 이사 등의 환경변화가 있어서 가정법원에서의 확인이나 후견인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 개인후견보다 법인후견에 있어서의 담당자 교체는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되어 후견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40] 피성년후견인의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특정 영역의 전문가에게 후견을 희망하고 있어도 그들에 대한 접촉 기회가 거의 불가능하여 후견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문직이 소속된 법인과 그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전문가로 구성된 직능단체의 네트워크는 각 지역이 갖는 특수성 및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43]. 이외에도 후견업무에 참여하는 다양한 법인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후견보수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의 권리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법인후견이라고 해도 피성년후견인과의 접촉이 형식적이거나, 실제의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는 상황에서는 피성년후견인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없어서 이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거나,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법인후견이 진행되면서 조직의 일반적 문제로 지적되는 개인이 조직에 매몰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업무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지적[19]되기도 한다.

5) 上田晴男(2010). 権利擁護支援としての成年後見: 地域における権利擁護支援システムの構築を目指して. 大原社會問題研究所雑誌, 625, pp.8 이하 참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후견 업무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전제로 그것을 공개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과 같은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V. 한국에의 시사점

지금까지 성년후견인의 유형 중에서 일본에서 증가하고 있는 법인후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 일부 법률전문가 직능단체 중심으로 종래의 법인형태를 유지하면서 후견업무를 담당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이 단체는 후견업무를 그들의 사업영역으로 확보하려는 의도가 다소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법인들의 준비는 많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법인후견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들의 시급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법인형태는 고령화가 뚜렷하여 적절한 성년후견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후견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신장보호의 강화추세에 따라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개인보다 더 많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서 후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요구된다.

1. 다양한 법인의 참여

성년후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요보호성년자의 다양한 욕구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후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50만 명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11],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법인형태의 후견이 가능하다고 규정(민법 제930조)되어 있을 뿐이며, 법인에 대한 설립기준이나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 전혀 규정이 없으므로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성격을 갖는 법인들이 이 제도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피후견인에게 보다 친밀한 지역에서 간편하게 이용가능한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만,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법인후견에 직접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각 전문가 직능단체의 지역협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업무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 오카야마(岡山)지역은 법인후견 사건 중에서 72%가 전문가 직능단체의 비영리법인에서 각 지부를 활용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23]. 이외에도 각각의 전문직 단체가 연합하여 복합적 성격의 새로운 법인을 창설하여 후견업무를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 내지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후견법인을 설립하여 후견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면서 그 지역에서 진행되는 후견업무도 감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후견법인의 지역편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각 지역에서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후견업무를 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현(岐阜縣)의 도노(東濃)성년후견센터나 아이치현(愛知縣)의 치다(知多)지역후견센터는 각 지역의 공적사업의 위탁을 받아 활동하면서 일차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가정재판소가 최종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2. 법인의 역할 확대

법인은 직접 후견인이 되거나 후견감독인이 되어 활동하는 것 이외에도 후견인의 양성과 교육, 지도관리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기대된다.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누적됨에 따라 가정법원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후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감독기능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므로 그 역할의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주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직의 법인후견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시민후견인 양성과정에서 그 과정 전체 또는 후견법인의 주요 담당영역을 위탁받아 교육함으로써 높은 자질을 갖춘 시민후견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법인들이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통하여 성년후견제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과거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에서의 부정적 인식 내지 낙인의 한계를 제거하고, 제도 본래의 목적을 이해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피후견인에 대한 이해

성년후견제도가 실시되는 초기에는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험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이므로 전문적으로 구성된 법인도 약간은 혼란한 상태에서 후견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친족의 경우와 달리, 법인후견은 피후견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그들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후견인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며, 피후견인의 건강 및 생활상황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적절한 변화가 필요하므로 피후견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후견을 희망하거나 후견이 필요한 요보호성년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준비는 미흡하며, 일부 법률전문가 단체가 후견제도에 대한 연구와 공청회 실시 등을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후견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서 각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준비할 수는 없지만, 각 계층과 집단의 전반적인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 및 그들에 대한 사회·심리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와 준비는 조속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

4. 법인의 재정적 문제

다음으로, 법인후견은 재정면과 수익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서 법인은 조직형태이고, 그 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경비 및 직원 인건비 등 지출해야 할 비용도 개인형태의 후견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후견보수의 청구를 통해서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상태 및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안정된 수입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일정기간 동안 후견업무를 실시한 후에 가정법원에 후견보수를 청구하므로 후불적 성격이 강하여 수입과 지출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워 법인운영에 있어서 재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적 형태의 후견보다 다수의 피후견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후견에 대한 보수총액과 비용

을 비교하여 그것이 적절하면 업무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며, 법인을 통한 후견업무의 협동화를 통하여 전문가 집단의 높은 보수 문제도 해결하여 재정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빈곤 등의 이유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후견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지자체의 일정지원을 통하여 재정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기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복지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관련 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이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제도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정비를 통해서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의 최소화화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활동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성년후견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의 기능 및 인력을 조속히 확충하여 궁극적으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결국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의 대체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및 사회생활의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에게 자기 결정권 및 잔존능력에 대한 배려와 국가의 후견적 역할이 더 강화되는 사회보장적 의미의 제도라 할 수 있다 [7]. 본 연구에서는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최근 동향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제3자 성년후견인의 유형 중에서 법인후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의 후견업무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재산관리에 한정하지 않고, 생활지원 및 자립지원을 중시하여 이른바 신상보호까지도 포함하게 되어 그 영역이 광범위하고 복잡하므로 전문적으로 구성된 법인후견이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41][44].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앞둔 한국에서는 요보호성년자가 요청하는 다양한 후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양질의 법인을 확보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규정과 제도가 적절하게

마련되고 운영되더라도 제도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인 조건이 되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확대가 요구된다[12]. 마지막으로, 노령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요보호성년자들이 곧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를 통해서 온전한 삶을 향유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1] 남윤봉, “민법일부개정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제28권, 제1호, pp.47-69, 2011.
- [2] 이승길, “현행 민법상 후견제도 문제점과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제11권, 제2호, pp.7-38, 2009.
- [3] 이영규, “성년후견법안의 검토 및 향후 과제”, 경남법학, 제26권, pp.209-247, 2010.
- [4] 최현태, “자기결정능력 장애자 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법학연구, 제39권, pp.135-155, 2010.
- [5]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7209)*, 법무부, 2009.
- [6] 임혜경, “권리옹호 정책으로서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문제점과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1호, pp.121-144, 2009.
- [7] 김주현, “성년후견제도의 자기결정존중 원리를 중심으로 본 고령자 권리”, 법학논총, 제36권, 제1호, pp.547-575, 2012.
- [8] 이정식, “성년후견제도의 사회보장적 법적 방안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제15권, 제3호, pp.251-294, 2009.
- [9] 최윤영, “사회복지적 관점의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교육, 제17권, pp.97-121, 2012.
- [10] 김현진, “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 가족법연구, 제26권, 제1호, pp.71-126, 2012.
- [11] 최윤영,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제1차 장애인정책 토론회 자료집, 2011.
- [12] 전병주, *고령화 사회에 있어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저출산·고령사회 논문공모전 자료집, 2012.
- [13] 최은영, 김정석, “최근 사회노년학의 연구동향”,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1호, pp.165-185, 2012.
- [14] 김영필, “일본의 고령화와 복지사회의 이행”, 일본문화연구, 제25권, pp.321-341, 2008.
- [15] 서동희,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사각지대의 여성 복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2호, pp.320-328, 2009.
- [16] 佐藤英晶, “特別養護老人ホーム入所に關わるアカウンタビリティとアドボカシー”, 帶廣大谷短期大學紀要, 第47卷, pp.1-10, 2010.
- [17] 上田晴男, “權利擁護支援としての成年後見: 地域における權利擁護支援システムの構築を目指して”, 大原社會問題研究所雜誌, 第625卷, pp.1-11, 2010.
- [18] 高田洋子, “市民參加と成年後見制度”, 福井大學教育地域科學部紀要, 第2卷, pp.269-292, 2012.
- [19] 上山泰, *專門職後見人と身上監護*, 民事法研究会, 2008.
- [20] 最高裁判所, *成年後見關係事件の概況*, 2012.
- [21] 佐藤繭美, “成年後見制度をめぐる課題: 福祉的經營の視点から”, 大原社會問題研究所雜誌, 第625卷, pp.12-22, 2010.
- [22] 上山泰, “日本における公的成年後見制度の導入について—ドイツの運用スキームを参考に”, 大原社會問題研究所雜誌, 第641卷, pp.44-58, 2012.
- [23] 西尾敦史, “成年後見の社會化における法人後見の意義: 沖繩縣内の市町村社會福祉協議會の取り組みを通して”, 地域研究, 第9卷, pp.13-26, 2012.
- [24] 新井誠, “法人後見の意義と役割”, 實踐成年後見, 第29卷, pp.4-17, 2009.
- [25] 전형미,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제3자 후견인 확보에 관한 연구”, 아시아연구, 제11권, 제1호, pp.157-181, 2008.
- [26] 제철웅 외,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신상보호 관*

- 개정령 준비를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2012.
- [27] 安心生活創造事業推進検討會, 安心生活創造事業と權利擁護の關係について, 第8回 資料集, 2011.
- [28] 山口縣社會福祉協議會・山口縣法人成年後見支援センター, 成年後見制度に関する實態把握調査, 2008.
- [29] 武藤忠義, 田中和代, “成年後見制度を担う社會福祉士の育成について”, 中部學院大學研究紀要, 第9卷, pp.167-171, 2008.
- [30] 小林有紀子, “成年後見制度における市民後見人の養成と活用”, 21世紀社會デザイン研究, 第10卷, pp.247-255, 2011.
- [31] 山口春子, “成年後見制度: 「自己決定の尊重」と「保護」の理念の調和”, 東京成徳大學研究紀要, 第15卷, pp.61-73, 2008.
- [32] 成年後見法學會, 市町村における權利擁護のあり方に關する研究 報告書, 2007.
- [33] 東京大學政策ビジョン研究センター, 第1回 市民後見全國大會 資料集, 2011.
- [34] 東京都廳, 後見人等候補者養成事業基礎講習修了生選任狀況 報告書, 2011.
- [35] 정경희, “고령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현황”,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81호, pp.1-8, 2013.
- [36] 岡山家庭裁判所成年後見小委員會, “岡山家庭裁判所における法人後見の實際”, 實踐成年後見, 第29卷, pp.18-27, 2009.
- [37] 田山輝明, “成年後見制度と地域福祉權利擁護事業の現狀と課題”, 月刊福祉, 第89卷, 第2号, pp.18-23, 2006.
- [38] 山口春子, “成年後見人の職務”, 東京成徳大學研究紀要, 第18卷, pp.59-72, 2011.
- [39] 菅富美枝, “イギリスの成年後見制度にみる市民社會の横想”, The Hosei University economic review, 第78卷, 第3号, pp.341-375, 2011.
- [40] 今村浩司・本郷秀和・畑香里, “成年後見制度に關する一考察: 北九州成年後見センターの取り組みを參考に”, 福岡縣立大學人間社會學部紀要, 第19卷, 第2号, pp.33-51, 2011.
- [41] 民事法務協會 成年後見制度研究會, 成年後見制度の現狀分析と課題の檢討: 成年後見制度の更なる円滑な利用に向けて, 2010.
- [42] 武市浩之, “北海道における成年後見制度利用支援事業の現狀と課題”, 北海道医療大學看護福祉學部學會誌 第7卷, pp.5-12, 2011.
- [43] 정재욱, “로컬거버넌스 수준에서의 지역복지서비스 제공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4호, pp.155-163, 2008.
- [44] 飯田勝巳, “成年後見の現狀と課題”, 帝京短期大學紀要, 第13卷, pp.77-86, 2004.

저 자 소 개

전 병 주(Byeong-Joo Jeon)

정희원



- 2002년 8월 :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2009년 8월 : 충북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2012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 사회보장, 보건의료, 노인복지

김 건 호(Keon-Ho Kim)

정희원



- 1986년 2월 :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1995년 3월 : 변호사
- 1998년 2월 :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2006년 3월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 법조윤리, 민사소송, 도산